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 명 : 김정환 소유물건(2024타경571619)

의뢰인 :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상규

감정서번호 : GD03-241125-3006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감정평가법인 감동 경인지사

TEL. 032-466-5248

FAX. 0505-182-4448

(구분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柳光錫



유광석

(주)감정평가법인 감동 경인지사 지사장 전갑효

(서명 또는 인)

감정평가액	팔천사백삼십만원정(₩84,300,000.-)					
의뢰인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상규	감정평가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인천지방법원 경매11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김정환 (2024타경571619)	감정평가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제시목록 외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4.12.06	2024.12.04 ~2024.12.06	2024.12.06		
감정평가 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구분건물	1세대	구분건물	1세대	-	84,300,000
	합계					₩84,300,000
심사 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 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김민구					
			全玟玟		(인)	

(주)감정평가법인 감동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학익여자고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통칭 "덕성빌라 비동" 제2층 제201호)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경매 진행을 위한 감정평가입니다.

2.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

가.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4년 12월 6일로 결정하였습니다.

나.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2024년 12월 4일 실지조사를 통하여 대상물건의 이용상황 및 공부·현황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3. 기준가치

가. 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함이 원칙이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감정평가 목적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4. 감정평가 조건 검토

가. 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함이 원칙이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습니다.

나. 감정평가 조건 검토

별도로 부가된 감정평가조건은 없습니다.

5. 감정평가 기준 및 감정평가 방법

가. 감정평가의 근거법령 등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감정평가 관계 법령과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나. 감정평가 관련 규정의 검토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시장가치기준 원칙)

- ①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 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다. 본건에 적용한 감정평가방법

본건 구분건물의 감정평가에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2조 제1항의 대상 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에 따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6조 등에 의거 위치, 입지조건, 부근상황 및 건물의 구조, 용재, 시공상태, 설비상태, 층별, 향별, 위치별 효용성 등 제반 가격 형성요인을 비교·검토하여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권을 일체로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며,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므로 시산가액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습니다.

6. 그 밖의 사항

- 가. 본건의 소재지, 지번, 면적 등은 귀 제시목록 및 공부 등에 의거 하였습니다.
- 나. 본건 현장조사 시 폐문부재 상태로서 건축물현황도, 외부관찰, 탐문 등을 종합 고려하여 표준적 이용에 따른 내부구조와 이용상황, 마감재의 사용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는바 실제와 다소 상이 할 수 있으니 경매진행 시 입찰참여자 등 이해관계인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본건 현장조사 시 현황 현관표식에 따른 호별 위치와 건축물현황 도면상의 표시가 서로 상이하여 공부상의 도면을 기준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상호 전유면적 및 대지권이 현황과 도면상 동일하며 가치형성요인이 대체로 유사하여 감정평가금액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매진행시 이해관계인은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구분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전유 부분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또한, 구분건물과 토지를 일체로 하여 거래가 되므로 토지 및 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요청에 의거 대상 부동산의 평가가격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부동산연구원의 「(공동주택) 토지·건물 배분비율 작성 연구」, 대상 부동산의 개별적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토지 및 건물 가격을 배분한 후,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상에 부기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 본건은 법원경매 목적의 감정평가로서 본건 평가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다른 목적으로 감정평가 시에는 감정평가서의 내용이나 감정평가액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 대상물건 개요

소재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343-167 외 1필지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기길 42-7			
건물명	통칭 "덕성빌라 비동"	사용승인일	1995.04.25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주용도	다세대주택	
전체층수	지상4층	세대수	0호/0가구/8세대	
물건내역	층·호수	전유면적	대지권면적	비고
1	제2층 제201호	40.37㎡	13.625㎡	



대상건물(통칭 "덕성빌라 비동")

좌(표식201호, 도면202호),
우(표식202호, 도면201호)

III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1. 거래사례의 선택

가. 거래사례의 내역

기 호	소재지	건물명	층/호	전유 면적 (㎡)	거래금액 (원)	거래단가 (원/㎡)	거래시점	비고
1	주안동 1338-6	동일 타운	3/30*	36.19	77,000,000	2,127,660	24.06.06	
2	주안동 1335-59	-	2/20*	52.73	117,000,000	2,218,851	24.05.28	
3	주안동 1335-27	선진2 차빌라	1/10*	35.61	84,000,000	2,358,888	23.12.09	
4	주안동 1334-6	신기하 이츠빌 라	3/30*	44.28	90,000,000	2,032,520	24.05.13	

※ 출처: 감정평가정보체계(한국부동산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거래사례의 선택

상기 거래사례 중 평가목적, 본건과 위치, 층별 및 위치별 효용도 등에서 유사하여 비교 가능성이 높은 <거래사례1>을 선택하여 적용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71619

2. 사정보증

상기 사례는 매도자와 매수자간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되므로 별도의 보정은 불필요합니다.

사정보증률	1.000
-------	-------

3. 시점수정

- 1) 지 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 가격지수 : 인천광역시 (연립주택) 매매 가격지수
- 3) 기준시점 : 2024. 12. 06. (거래시점: 2024.06.06.)
- 4) 시점수정치

지역-용도	가격변동률	계 산 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0.722% (0.99278)	연립다세대 지역 : 인천광역시(24.06.06~24.12.06) 거래시점 : 2024.06.06, 2024년05월 지수를 적용 함 기준시점 : 2024.12.06, 2024년11월 지수를 적용하여야 하나 발표이전 이므로 2024년10월 지수를 적용함 2024.06.06 매매 가격지수 (적용:2024년05월) : 96.9 2024.12.06 매매 가격지수 (적용:2024년10월) : 96.2 시점수정치 : $96.2/96.9 \approx 0.99278$

4. 가치형성요인 비교

가. 개요

집합건축물의 가격은 일반부동산과 달리 단일 혹은 수개의 필지로 이루어진 일단의 토지상에 소재하는 일동의 건물에 다수의 구분소유권이 존재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가치형성요인은 전체부동산에 대한 가치형성요인과 대상 구분소유건물 자체의 가치형성요인으로 구성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형성요인의 구분으로서 전체부동산에 대한 가치형성요인은 ①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단지 외부요인과 ②구분소유권이 속하는 건물 전체에 대한 단지 내부요인으로 구성되며 ③구분소유건물 자체의 가치형성요인으로서 구분소유권의 전유부분에 대한 호별 요인 등으로 구별되는바 이를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격차율을 산정하여 반영합니다.

가치형성요인	조건 및 항목	비 고
단지 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 등	
단지 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단지 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년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 내 통로구조, 주차의 편리성 등	
호별 요인	층별, 향별, 위치별 효용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평면 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등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71619

나. 가치형성요인 비교

가치형성요인		격 차 율		
요 인	조 건	대 상	사 례	비 고
단지 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1.00	1.00	본건은 사례와 비교하여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 등 단지 외부요인에서 상호 유사 합니다.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조망, 풍치, 경관 등)			
단지 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0.97	1.00	본건은 사례와 비교하여 경과년수에 따른 노후도 등 단지 내부요인에서 상호 열세 합니다.
	단지 내 총 세대 수 및 최고층 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년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 내 통로구조(복도식/ 계단식)			
	주차의 편리성			
호별 요인	층별 효용	1.02	1.00	본건은 사례대비 전유면적 등 호별요인에서 본건이 우세 합니다.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평면 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등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1.00	유사합니다.
누 계		0.989	1.000	

5. 시산가액의 결정

가. 산정단가의 결정

$$\text{사례단가} \times \text{사정보정}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가치형성요인} = \text{산정단가}$$

일련 번호	사례단가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형성 요인	산정단가 (원/㎡)
1	2,127,660	1.000	0.99278	0.989	2,089,063

나. 총액의 결정

일련 번호	산정단가 (원/㎡)	전유면적 (㎡)	시산가액 (원)	결정가액 (원)	비고
1	2,089,063	40.37	84,335,473	84,300,000	

※ 기준시점 현재 토지 : 건물 배분비율은 0.7 : 0.3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71619

7. 감정평가 전례

기 호	소재지	건물명	층/호	전유 면적 (㎡)	평가금액 (원)	평가단가 (원/㎡)	기준 시점	평가 목적
1	주안동 1343-167	덕성빌라 비동	4/40*	40.37	88,000,000	2,179,837	21.01.25	법원 경매
2	주안동 1428-16	우원 하이츠	5/50*	44.61	97,000,000	2,174,400	24.04.30	법원 경매
3	주안동 1418-121	현대파크 맨션	5/50*	45.6	114,000,000	2,500,000	24.01.30	담보
4	주안동 1358-19	하나 맨션	3/30*	31.25	60,000,000	1,920,000	24.07.15	담보

※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KAPA HUB PLUS

IV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의견

1. 감정평가액의 결정

일련 번호	소재지	층·호수	결정가액 (원)	비고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343-167외 "덕성빌라 비동"	제2층 제201호	84,300,000	
합 계			84,300,000	

2. 감정평가액의 결정에 관한 의견

가. 감정평가액의 결정: 84,300,000원

나. 결정에 관한 의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감정평가 관련 제 법령에 근거하여 비교방식으로 산정된 시산가액은 상기와 같으며, 평가과정에서의 근거자료(거래사례 및 평가전례, 탐문조사에 의한 가격수준 등)에 의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평가 목적 등을 고려하여 상기와 같이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기길 42-7	1343-167, 1343-168	다세대주택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1층~4층	(각) 90.88			
	1 동소	1343-167	대	제3종일반주거지역	73			
	2 동소	1343-168	대	제3종일반주거지역	36			
	동소	1343-167, 1343-168	위 지상	(내) 철근콘크리트조 제2층 제201호 1, 2 소유권대지권	40.37 13.625 109x ---- 109	40.37 13.625	84,300,000	비준가액 (공용면적 포함)
	합 계						₩84,300,000.-	토지건물 배분 토지 59,010,000 건물 25,290,000
			이	하	여	백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학익여자고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및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여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본건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 내 제2층 제201호로서,
 외벽 : 테라코타 및 페인트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마감등임.

(4) 이용상태

본건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본건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 2필 일단의 가장형토지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 포장도로 이용 가능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주안동 1343-167은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완료-2006.12.31)〈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3-09-20), 주안동 1343-168은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완료-2006.12.31)〈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3-09-20)임.

(9) 공부와의 차이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본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 순위번호 11 주택임차권 등기가 등재되어 있음.

본건 건축물현황도면상의 위치와 현황이 서로 상이하므로 경매진행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 위치도



소재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343-167 외 1필지 제2층 제201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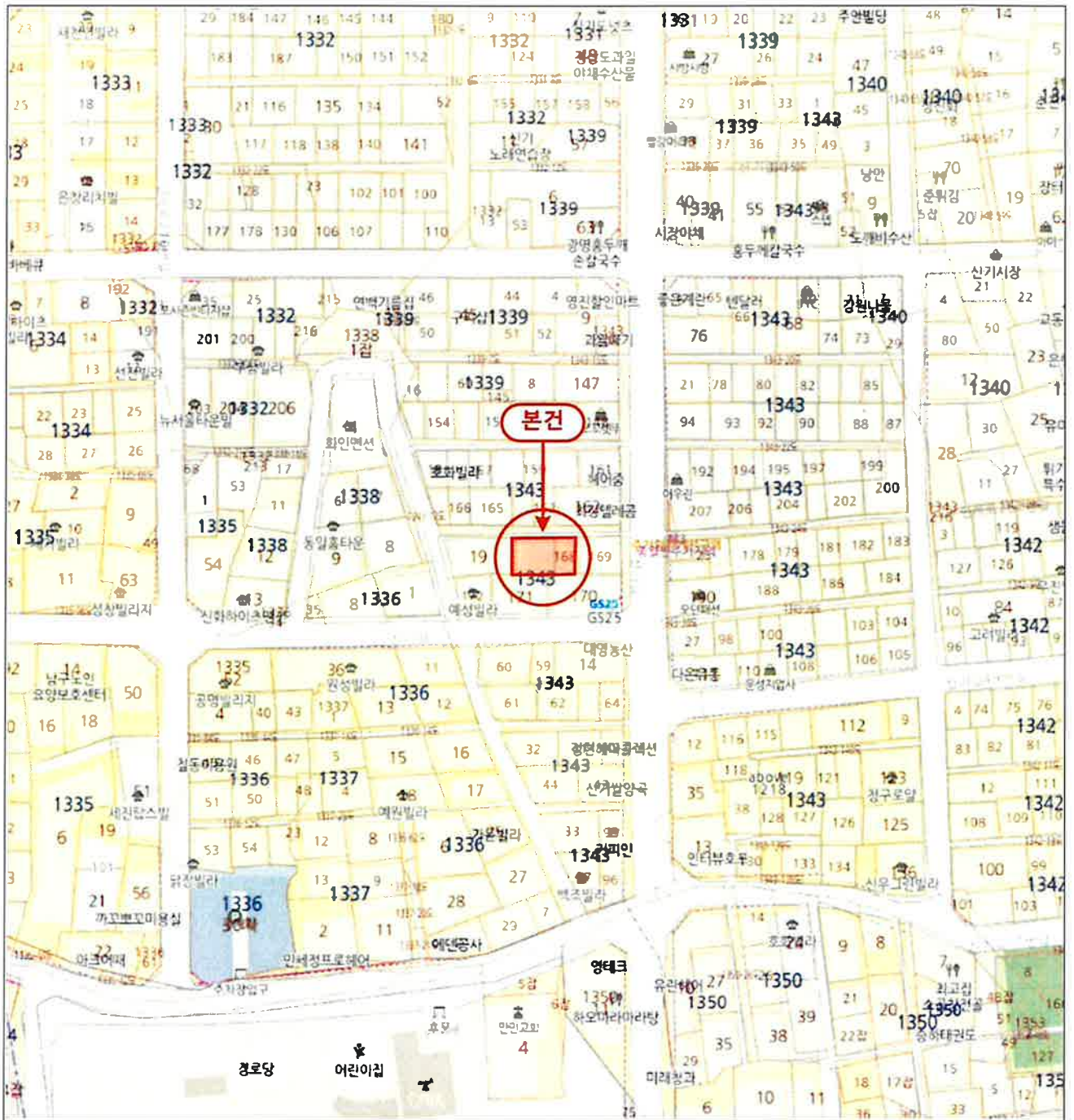


(주)감정평가법인 감동

위 치 도



소재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343-167 외 1필지 제2층 제2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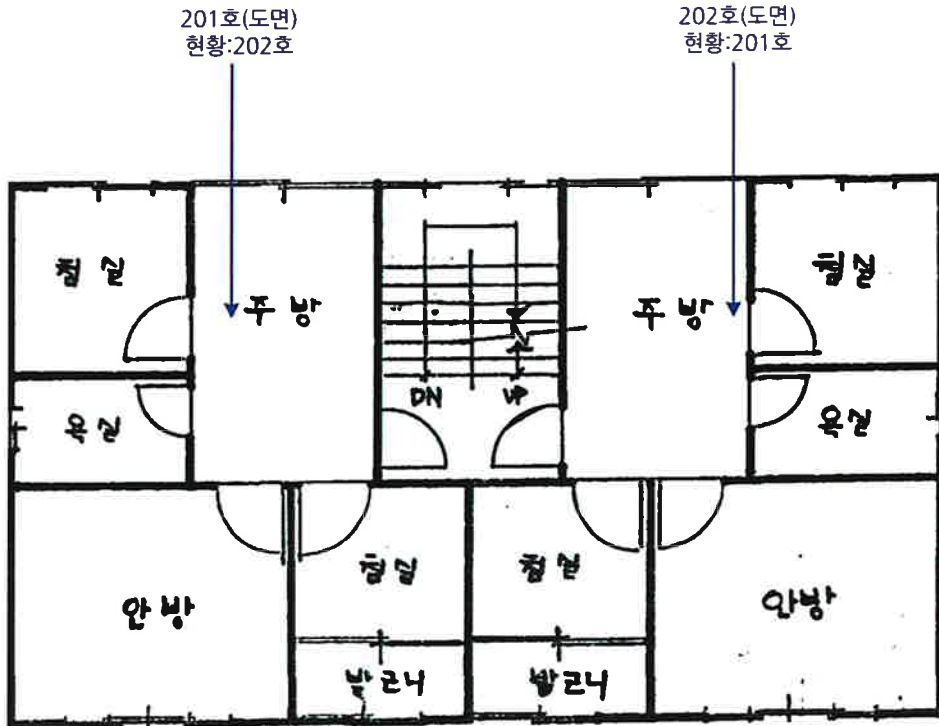
내부구조도



소재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343-167 외 1필지 제2층 제201호
-----	---

4
No Scale

【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



【 (1) 제2층 제201호 】

사 진 용 지



대상건물



출입구

사 진 용 지



201호(표식201호 도면상 202호)



좌(표식201 도면202), 우(표식202 도면201)

사 진 용 지



통로 및 주위환경



진입로 및 주위환경

회보서

우)21534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개서로 97번길 15 (구월동 1256-1) 향군회관 3층 302

TEL. 032-466-5248

FAX. 0505-182-4448

문서번호 : GD03-241125-3006

시행일자 : 2024-12-06

수신 :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상규

참조 : 경매11계

제목 : 감정 의뢰에 대한 회보

선결			지시		
접수	일자		결재·공람		
	시간				
처리과	번호				
담당자					

1. 저희 (주)감정평가법인 감동의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오며, 귀 법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4-11-25자 귀 제 『2024타경571619』호로 의뢰하신 『김정환 소유물건(2024타경571619)』건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감정하여 회보합니다.

첨부 : 1. 감정평가서 1부
2. 청구서 1부

(주)감정평가법인 감동 경인지사
지사장 전갑효



수수료 청구서

문서번호 : GD03-241125-3006

수신 :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상규 귀하

제목 : 감정평가 의뢰에 대한 회신 및 수수료 납입통지

1. 2024.11.25 자 귀 제 『 2024타경571619 』호로

의뢰하신 『 김정환 소유물건(2024타경571619) 』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평가하여 회보합니다.

2. 위 건에 대하여 감정평가 보수 기준에 의거 아래와 같이 평가수수료를 청구하오니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내역

과목	금액	비고
평가수수료	290,000	
실비	여비	110,000
	토지조사비	-
	물건조사비	10,000
	공부발급비	3,180
	기타 실비	6,000
비	소계	129,180
특별용역비	-	
공급가액	419,000	1,000원 미만 절사
부가세	41,900	
합계	460,900	
기납부 착수금	-	
정산청구액	460,900	

붙임 : 감정평가서 1 부

※ 송금처 ※

국민은행 : 756001-00-116904(예금주:(주)감정평가법인감동 경인지사)

(주)감정평가법인 감동 경인지사

지사장 전갑효

TEL. 032-466-5248

FAX. 0505-182-4448